

		시 민				
문서번호	어르신복지과-4017	주무관	어르신돌봄팀장	어르신복지과장	복지기획관	복지정책실장
결재일자	2019. 3. 5.					
공개여부	대시인공개					
방침번호		협 조	요양보호팀장			

2019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

2019. 3.

복지정책실
(어르신복지과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제형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- 타 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지속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협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2019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

어르신돌봄 가족의 정서적, 신체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족휴가비 및 어르신 돌봄비를 지원하여 돌봄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I 추진 개요

□ 추진근거

- 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-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
- 민선 6기 시장 공약('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' 운영)
- 2015년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(어르신복지과-10329, 2015.6.5.)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치매 및 노인성질환 등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가족 구성원의 정서적·신체적 어려움이 심각함.

< 노인돌봄으로 인한 가족돌봄자의 어려움 현황 >

- ▶ 심리·정서적 어려움(5점 척도 중 4.17점) > 사회·문화적 활동참여 어려움(4.03점) > 신체적 어려움(4.02점) > 경제적 어려움(3.70점) 순
- ※ 출처 : 서울시복지재단 「일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연구('17.11.)」

- 돌봄가족에게 일상을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기능의 강화 및 안정 도모

<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선호도 >

- ▶ 가족돌봄휴직제도(27.0%) > 서울시 노인돌봄가족휴가제(24.0%) > 시간제근무제(13.5%) > 가족간호휴가제도(9.5%) > 서울시 치매상담지원센터(8.5%) 등의 순
- ※ 출처 : 서울시복지재단 「일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연구('17.11.)」

II 2018년 운영실적

□ 예산액 : 417,768천원(휴가비 300,000천원, 돌봄비 117,768천원)

□ 지원실적 : 411,667천원(1,188명 지원)

< 가족여행 유형별 참여인원 >

구분	합 계				개별여행				단체여행(협회)			
	계	당일	1박2일	2박3일	소계	당일	1박2일	2박3일	소계	당일	1박2일	2박3일
참여자(명)	1,188	161	584	443	985	161	408	416	203	-	176	27
비율(%)	100	14	49	37	100	16	42	42	100	-	87	13

< 연도별 지원실적 >

◆ 가족휴가 지원현황

연도	계	유형별				휴가일수별		
		개별여행	단체 여행			당일	1박2일	2박3일
			소계	이용기관	협회			
2018	1,188명 (100%)	985명 (83%)	203명 (17%)	-	203명 (17%)	161명 (14%)	584명 (49%)	443명 (37%)
2017	1,198명 (100%)	834명 (69.6%)	364명 (30.4%)	-	364명 (30.4%)	130명 (10.8%)	618명 (51.6%)	450명 (37.6%)
2016	1,219명 (100%)	789명 (64.7%)	430명 (35.3%)	108명 (8.9%)	322명 (26.4%)	206명 (16.9%)	638명 (52.3%)	375명 (30.8%)

◆ 예산집행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	예산액	집행액	집행률(%)	비 고
2018	417,768	411,666	98.5%	
2017	417,768	404,625	96.9%	
2016	417,768	337,193	80.7%	

□ 운영성과

-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 돌봄에서 오는 정서적·신체적 스트레스 해소
- 단체 활동 및 대화를 통한 보호자간 유대감 형성 및 돌봄정보 교환
-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건전한 쉼을 지원하여 삶의 활력 유도

III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

□ 비용청구 방법 및 운영시기 개선

- 사전신청 절차없이 개별여행 후 비용요청으로 예산 소진 민원발생
 - 사전 여행계획 및 참가신청 없이 사후 비용청구 선착순 마감으로 인해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민원 발생

▶▶▶ **휴가대상자를 선정하고 여행계획서 제출 의무화, 여행시기는 연3회로 분할**

- 개별여행비 목적외 사용 및 증빙서류 정산방법 복잡
 - 여행비를 식비·숙박비 등이 아닌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, 가구당 여행참여 정수 2인 외 다수인원 참여시 사용내역 정산이 복잡함

▶▶▶ **개별여행은 인원 제한없이 가구당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하고, 지출 가능 항목을 서약서에 기재(단, 기준금액보다 적게 사용시 실지출액만 지급)**

□ 추진기관 단일화

-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의 추진기관 이원화로 휴가제 이용자 혼란
 - 개별여행은 데이케어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, 단체여행은 서울시재가 노인복지협회 운영으로 휴가제 이용자 혼란야기

▶▶▶ **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로 단일화하여 여행접수 및 비용지원,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전반 사항 추진**

□ 지원기준안 마련(신규신청자 우선지원 등)

- 신규신청자와 기 수혜자 구분없이 선착순 신청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
 - 휴가제 신청 대상자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선착순 마감으로 기수혜자가 반복하여 지원을 받거나 단체여행 당일 취소시 아무런 제재가 없음

▶▶▶ **우선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기수혜자 및 여행 취소자는 후순위로 배정**

IV 2019년 운영계획

1 사업개요

□ 사업대상 : 어르신 돌봄가족 1,300명

-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르신 주 돌봄자
 - ※ 돌봄 어르신 :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및 등급외자

□ 사업예산 : 546,000천원

- 휴가비 390,000천원, 돌봄비 156,000원

□ 사업내용 : 단체여행, 개별여행(3:7 비율)

- 사업기간 : '19.4~10월 ※ 회차별 개인·단체여행 병행 실시
 - 연 3회(봄 4~5월, 여름 7~8월, 가을 9월~10월(명절제외))

□ 선정기준 : 선정지표를 적용하여 선정

- ※ 우선 선정기준 : 신규신청자 > 가족돌봄 기간 6개월 이상인자 > 중증환자 (요양등급 순)

□ 지원내용 : 가족휴가비 + 어르신돌봄비 지원(연 1회)

○ 가족휴가비

연도	단체여행(인당, 최대2인)			개별여행(가구당)		
	당 일	1박2일	2박3일	당 일	1박2일	2박3일
19년	15만원	30만원	35만원	15만원	30만원	35만원

○ 어르신 돌봄비 (단체, 개별여행)

연도	당 일	1박2일	2박3일
19년	4만원	8만원	12만원

□ 신청기관 :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

2 세부 추진계획

- 휴가범위 : 국내여행, 연3회(분기별 운영)
- 휴가기간 : 1일, 1박2일, 2박3일 중 선택
- 참가자 : 어르신 돌봄가족

▶ 가족범위(민법 779조) :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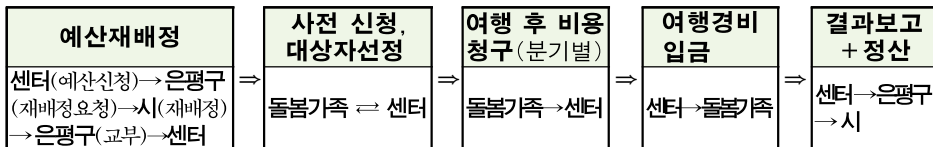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 거주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서, 아래의 ①,②,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

구분	상 세 기 준	비 고
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[등급인정자]	①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	이용기관에서 등급확인
	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,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	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서 제출
장기요양 [등급외자]	③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	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료 제출

추진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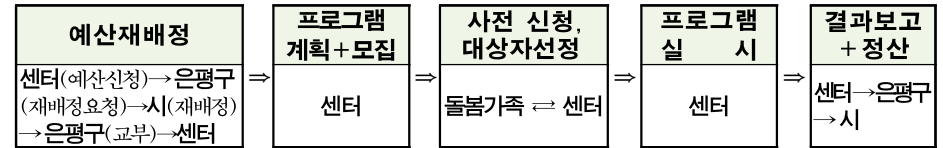
개별 여행

- 내 용
 - (원칙) 전문 여행사의 개별 여행프로그램 참여
 - (선택) 희망시 가족별 자유여행 실시 ※ 전문여행사 미이용시 신청서에 사유 기재
- 이용방법 : 사전 신청·선정 후 여행 실시, 비용청구(여행계획서 필수 제출)
- 지원방법 : 여행 사실 확인 후 가구당 정액 지급
 - 가구당 기준금액 미사용시 실지출액만 지급, 명절기간 여행 지원 제외
- 추진절차



단체 여행

- 내 용 : ‘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’ 주관 단체 프로그램 참가
 - 역사·문화 탐방, 힐링·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
- 이용방법 : 단체프로그램 신청, 선정자 참가
- 신청기관 :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(은평구 소재)
- 추진절차



- 유의사항
 - 단체 프로그램 진행시 센터 직원 등 인솔자 포함 가능
 -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사전설명,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 시행

〈 어르신돌봄비 지원기준 〉 ※ 단체·개별여행 공통

- ◆ (원칙) 단기보호시설 및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 : 본인부담금 지원
- ◆ (예외) 시설 미이용시 : 현금 지원(신청서에 시설 미이용 사유 기재)

소요예산 : 546,000천원(사비100%)

- 산출내역 (단체여행 : 개별여행 = 3:7)

구분	지원인원	신청시기	휴가실시	휴가비(천원)	돌봄비(천원)
단체여행	400명	3월 6월	1차 4월~5월	120,000	48,000
			2차 7월~8월		
개별여행	900명	8월	3차 9월~10월	270,000	108,000
계	1,300명	-	총 3회	390,000	156,000

- 예산과목 :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, 독거·재가 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, 어르신돌봄서비스지원강화(시비), 사회복지사업보조(307-11)

제출서류

구분	개별여행(개인)	단체여행(협회)
제출 서류	1. 여행계획서 2. 결과보고서·비용신청서 3. 가족여행사진 1매 4. 결제영수증(현금·신용·체크카드)*	1. 운영계획서 2. 결과보고서·보조금 신청서
공통 제출 서류	1. 신청서 및 서약서 2. 주민등록등·초본(어르신 신청자의 6개월이상 주소변동여력 포함) ※ 공고기간내 발급 3. 장기요양등급판정서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통지서 4.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5. 통장사본(돌봄가족 명의)	

* 현금·신용·체크카드 영수증 인정항목(간이영수증 불가, 돌봄가족 명의 영수증)

- 여행상품비 영수증
- 식비·입장료·숙박비·교통비 영수증(승인 여행기간 내 사용 영수증만 인정)
※ 사용불가 항목 예시 : 기념품, 개인용품, 상품권 구입, 골프장 이용료 등
- 단기보호시설·방문요양시설 이용 영수증

V 행정 사항

서울시(어르신복지과)

-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 수립
- 사업 홍보(영상매체, 방송사, 보도자료) 및 관리
- 예산교부(시 → 은평구 →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)

자치구

- 관내 해당기관에 사업 안내 및 홍보
 - 동주민센터,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(데이케어센터, 재가노인지원센터),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사업안내 및 자치구·기관 홈페이지에 사업홍보
- (은평구) 신청자 접수·선정내역 및 결과보고서 제출, 보조금 신청 등
 - 서울시에 신청자 및 선정자 제출 및 여행비 청구 등 협조

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

- 분기별 여행일정 및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재, 참가자 신청·접수
 - 센터 홈페이지 게재홍보, 개별·단체여행 신청서류 일체 보관 및 관리
- 휴가제 신청 DB관리 전산시스템 구축
- 단체여행의 힐링프로그램 자체개발 또는 여행사와 단가계약으로 우수 여행 프로그램 선정 후 세부 운영계획 수립
- 예산신청 및 정산보고 철저
 - 개별여행 : 비용청구서,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확인 제출
 - 단체여행 : 운영계획서, 보조금신청서,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
- 개별여행 참여자 비용입금(서울시→은평구→센터→돌봄가족)
- 휴가제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완료 후 정산
- 대상자 선정지표에 따라 대상자 선정 명확화
- 중복 신청자 및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 철저

VI 향후 일정

- 휴가비 및 돌봄비 예산배정(서울시) : '19.4.
- 1차 개별여행 신청 공고·접수(서울시·센터) : '19.3.~4.
- 1차 개별여행 대상자 선정 및 휴가실시(센터) : '19.4.~5.
- 1차 단체여행 신청 공고·접수(센터) : '19.4.~5.
- 1차 단체여행 대상자 선정 및 휴가실시(센터) : '19.5.
- 3·4분기 대상자 공고·접수 및 실시(센터) : '19.6.~10.
- 비용정산 및 운영실적 분석(서울시·센터) : '19.11.